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 공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 조기 소진 등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관 세 청 장

- 아 래 -

- (시 행) '24. 3. 18. 신청 건부터
- (세부내용) 공고 붙임 참고

①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 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아닌 업체가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비용 전액(이자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②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관 검사에 따른 적발률이 평균적발률보다 높거나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 물품을 밀수입하는 등 중대한 적발이력이 있는 업체

** 매년 초,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재산정하여 공고 예정

※ (적용) '23.1월~12월 적발이력을 기준으로 선별한 업체에 대하여 '24.3월~25.2월 검사비용 지원을 제한

※ (대상업체) ①공고 시행 전 개별 안내(이메일 및 전화), ②UNI-PASS에서 업체별로 조회('24.4월)

붙임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개요

□ 주요 내용

○ 대상업체

-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 검사유형

-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③ 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사업예산

- ('21년) 86.3억원,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 문의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8, 2531, 2537, 2539,

2544, 2533, 2534, 2545, 2529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붙임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발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
 - * 홈페이지 접속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 (심사)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제출 후 요건 충족시 자동 발급
- (문의) 중소기업 통합센터 (☎1357)

※ 홈페이지 접속시 하단에 신청서 안내문 게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범위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관세법**제173조(세관검사장)**

-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제187조의4(세관검사장)**

-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8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② 관세청장은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